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86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구자근 · 이상휘 · 박성민
최수진 · 김선교 · 박준태
정점식 · 김성원 · 강명구
김도읍 · 김위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생산설비 노후화, 자동화 수준 저하 등으로 제조 경쟁력이 약화되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제조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임에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 ①</p> <p>· ② (생 략)</p> <p><u><신 설></u></p>	<p>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 ①</p> <p>·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u></p>